

1. 의결주문

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항공보안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공보안협의회를 당연직 위원이 아닌 민간위원 없이 정부위원 및 공공기관 위원 중심의 협의체로 전환하고,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9. 7. ~ 9. 16.)

대통령령 제 호

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2. 「한국공항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및 「인천국제공항공사법」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 공사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

부 칙

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항공보안협회의회의 구성 등) ① (생략) ② 보안협회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1. (생략) 2. <u>항공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·공항운전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</u> ③ <u>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u> ④ ~ ⑨ (생략)	제2조(항공보안협회의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「한국공항공사법」에 따른 <u>한국공항공사 및 「인천국제공항공사법」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 공사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</u> <u><삭 제></u> ④ ~ ⑨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233